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변경(안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 125m²이상 → 250m²이상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업장을 말한다.”를 “사업장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중 대상 사업장을 가목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객실·객석면적	금 액	비 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당		월 1,200원	
감량의무사업장 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업소당	30㎡ 이하	월 3,000원	
	업소당	31㎡ 이상 60㎡ 이하	월 6,000원	
	업소당	61㎡ 이상 125㎡ 미만	월 9,000원	
	업소당	125㎡ 이상 250㎡ 미만	월 12,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생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u>사업장</u> 을 말한다.	2. ----- ----- ----- ----- -----사업장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대상 사업장을 가목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 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조례로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됨 (시행규칙 제9조의2)
<신 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